

2016년 12월 29일
서울특별시

공 고 사 항

구 분	내 용
개정조례명칭	○ 「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
청구인의 대표자	○ 성 명 : 이신희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
청구취지	○ 「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개정 청구
청구이유	○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를 사용 허가제로 변경
주요내용	○ 서울광장 '사용신고' 를 '사용허가 신청' 으로 변경 ○ 서울광장 '사용신고 수리' 를 '사용허가 또는 사용 제한' 으로 변경 ○ 서울광장 '사용 신고에 대한 통지' 를 '사용허가 등 통지' 로 변경하고 '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' 규정을 삭제 등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총무과(02-2133-5665, 564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-2497호

도시관리계획(「대학로 지구단위계획」 구역 변경 결정, 「혜화·명륜동 지구단위계획(주거환경관리사업)」 구역 및 계획 결정)(안) 재열람공고

종로구 혜화동(명륜1,2,3가동, 혜화동)일대 지구단위계획(주거환경관리사업)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(안)에 대하여 2016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6.09.28.)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.

2016년 12월 29일
서울특별시

- 1) 구 역 명 : 혜화·명륜동 지구단위계획(주거환경관리사업) 구역
(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)
- 2) 지구단위계획(주거환경관리사업)구역 지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
가)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)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	대학로 일대	477,346	감)38,753	438,593	-

나) 해화·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신설)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해화·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	종로구 해화동 (명륜1,2,3가동, 해화동)일대	-	증)461,242	461,242	-

다)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결정(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7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의제에 관한 사항)

구 분	정비사업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규	종로구 해화동 명륜·해화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	종로구 명륜3가동 1-1061번지 일대	-	증)287,743.1	287,743.1	

※ 세부 구역의 범위,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

- 3)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- 4) 열람장소 :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, 주거환경개선과, 종로구 주택과, 건축과
- 5) 열람내용 : 해화·명륜동 지구단위계획(주거환경관리사업) 구역 지정 및계획 결정(안)
- 6) 관련도서 비치 : 열람장소에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
- 7) 의견제출기관 :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(☎2133-8497), 주거환경개선과(☎2133-7249)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-2498호

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

‘도로법’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 위반자에게 ‘질서위반행위규제법’ 제17조, ‘지방세기본법’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‘행정절차법’ 제14조 제4항 및 ‘지방세기본법’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29일

서울특별시장

1. 건 명: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
2. 근 거: ‘도로법’ 제117조 제1항 및 ‘동법 시행령’ 제105조, ‘질서위반행위 규제법’ 제17조, ‘지방세기본법’ 제33조, 제61조, ‘행정절차법’ 제14조 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 - 가.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